

현직회장 재입후보시 제한 사항

* 적용기간 : 선거공고일로부터 후보자 등록시까지

* 적용제외사항 : 현직회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.

대상	내용	한시 적용-제한 내용	비고
회장 명의 각종 지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조직인사 대상 축·부의금 ○각종 조직행사에 대한 지원금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선거공고일로부터 후보자 확정 공고일까지 '회장명의'가 아닌 '한국교총' 명의로 지원 ○한국교총 명의라도 통상적·의례적 범위내에서만 가능 ○지원금 지원 범위 및 금액의 확대·변경이나 의례적·정기적이지 않은 행사에 대한 지원금 지원은 교총명의로라도 금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'교총 명의'만 가능 ○회장이 직접 전달하는 행위 금지
각종 행사 개최 또는 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각종 행사 개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의례적·통상적으로 그 시기에 시행되던 행사는 그대로 진행 허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: 스승의 날 및 교육주간, 현장교육연구대회 시상식 등 ○기존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행사 개최 및 후원 허용 ○그 이외 교총의 목적사업(회세 확장, 정책실현 등) 수행을 위해 긴급하게 반드시 개최할 필요가 있는 행사 제한적 허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: 기자회견, 집회 등 * 허용 여부는 선거분과위원회에서 결정 ○의례적·통상적이지 않거나, 반드시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개최할 필요가 없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금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: 긴급한 현안 없이 공청회, 심포지움, 토론회,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금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의례적·통상적 행사 개최 및 후원 가능 ○긴급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 개최는 하되, 회장 입후보자의 경우 모두 참석하거나 모두 불참하는 형식
교총 주최 행사에 교총 경비로 식사·기념품 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정기적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에 식사 제공 ○정기적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에 통상적·의례적으로 해 왔던 기념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가능한 한 식사제공 및 기념품 제공 피할 것(행사시간 조정 등 방법) ○불가피할 경우 통상적으로 식사를 제공해 왔던 행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(최고 1만원 이내)내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예산범위 고려 '1만원 이내 식사제공' 및 의례적·통상적 제공범위 기념품만 가능

대상	내용	한시 적용-제한 내용	비고
		서 식사제공 및 기념품 제공 가능(단, 기념품 제공 명의를 한국 교총명의)	
각종 행사 참석 및 연설	○의례적·통상적 행사에 참석해 교총 회장으로서 인사하는 행위	○시도교총, 시군구교총, 분회, 직능조직 등 교총의 공식조직에서 개최하는 회의는 참석할 수 있음. 단, 의례적으로 해오던 인사말은 허용하되, 일체의 정견이나 선거운동과 연관된 발언은 불허 *교총 회장 자격으로 참가했을 경우 선거용 명함 배부 등 일체의 선거 운동 금지	○통상적·의례적 행사에 교총 회장 자격으로 참여했을 경우 인사말 허용하되 정견이나 선거운동 관련 발언 불가
지역조직·직능단체·유관단체 행사 참석해 식사 제공하는 행위	○분회, 시군구교총, 시도교총, 직능조직, 기타 유관단체 주최 행사에 참석해 식사 제공하는 행위	○식사 제공 및 경비 부담 행위 금지 *의례적·정기적 '교총 명의' 지원금은 가능	○식사 제공 및 경비 부담 행위 금지
보도자료(동정 보도자료 포함)	○교총 보도자료에 현직회장의 실명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,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행위	○공식적인 선거 보도자료에 후보자 실명을 거론하고, 경력 등 필수사항을 알리는 경우는 가능(이 경우라도 선거분과위원장 확인 요망) ○그 이외에 특정 후보자의 실명을 거명하거나,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도하는 행위는 금지	○공식 선거 보도자료 외 실명 거론·유추하는 보도자료 금지 ○기간명의 보도자료 배포 가능
각종 간행물을 통한 선전	○교총 간행 각종 유인물에 특정 후보자 거명하거나 유추할 수 있도록 게재해서 내보내는 행위	○현직 회장을 특정하지 않고, 자체사업계획에 들어있거나, 회세 확장·정책선도 등 교총의 고유 목적사업을 달성할 목적으로 사업의 성과나 활동 등을 홍보하는 행위 허용 ○현직 회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불가 ○각종 사업의 추진성과를 현직 회장의 치적으로 돌리는 행위 불가	○특정 후보자의 실명을 거론하거나, 업적을 홍보하거나, 각종 사업의 추진성과를 특정 후보자의 치적으로 돌리는 간행물 발간 불가
한국교육신문 후보자 거명	○한국교육신문에 선거분과위원회가 승인한 선거공보 등을 제외하고, 특정 후보자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유추할 수 있도록 보도하는 행위	○스승의 날 및 현장교육연구대회 시상식 관련 사진, 교육주간(스승주간) 담화문 등 통상적·의례적 행사 중 중요한 행사에 대해서만 기존 한국교육신문에서 매년 보도한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행위 가능 *그 이외 선거기간 동안 사진 게재나 실명거론 불가	○스승의 날 등 통상적·의례적 행사 중 중요한 행사에 대해서만 매년 보도한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행위 가능 ○그 외에는 후보자 실명 거론해 보도

대상	내용	한시 적용-제한 내용	비고
		*특정 후보자 명의 칼럼·시론 등 게재 불가	하는 행위 불가
일간지 등 언론 칼럼 및 인터뷰 등 게재	○언론에 칼럼 및 인터뷰 등 시행 및 보도	○현직 회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의 칼럼(정기 칼럼 포함)이나 인터뷰(TV 포함) 불가 *단, 일간지나 TV 등 언론매체가 선거보도를 위해서 후보자들을 인터뷰하거나 보도하는 경우에는 무방	○선거기간 동안 선거보도 목적 이외의 칼럼 및 인터뷰 출연 불가
언론사 토론회, 대담 등 참석	○언론사의 토론회, 대담 등 참석	○선거공고일로부터 후보자 확정 공고일까지 언론사의 토론회, 대담 등 참석 불가 *현직 회장을 대신할 수 있는 인사가 참석토록 함.	○선거운동 기간 중 교총 회장 자격으로 언론사 토론회, 대담 참석 불가
교총 차량 및 운전원 이용	○교총 회장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시에는 이용 가능	○선거운동을 위한 활동에 교총 차량 및 운전원 이용 불가	○교총 회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시는 이용 가능 ○그 외 선거운동 수행 목적 일체 사용 불가